

CMA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계좌서비스(이하 "CMA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한 고객 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CMA계좌"란 고객이 CMA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 ② "제휴은행"이란 회사가 CMA서비스와 관련하여 연계계좌서비스 업무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 ③ "연계계좌"란 고객의 CMA계좌와 연결된 제휴은행의 가상계좌를 말한다.
- ④ "이체출금기관"이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각종 자금을 고객의 CMA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이체입금기관"이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고객의 CMA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⑥ "자동이체 입출금"이란 이체입금기관에 의한 CMA계좌로의 입금과 이체출금기관에 의한 CMA 계좌로부터의 출금을 말한다.
- ⑦ "증권카드"란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CMA계좌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 ⑧ "자동화기기"라 함은 은행의 관리 하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ATM(Automated-Teller Machine 및 CD(Cash Dispenser) 기계를 말한다.
- ⑨ "체크카드"란 CMA계좌의 잔고한도 내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신용카드회사의 체크카드 기능이 등록된 카드를 말한다.
- ⑩ "신용카드"란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기능이 등록된 카드를 말한다.
- ⑪ "CMA투자상품"이라 함은 CMA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매입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회사가 다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도하는 채권(이하 "RP"라 한다)
 2. 고객으로부터 일임 받아 운용하는 CMA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한국증권금융(주)의 일별 수익지급식 예수금 등(이하 "Wrap"이라 한다)

제3조(CMA서비스의 정의)

회사가 CMA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CMA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이 지정한 CMA투자상품을 고객의 입금에 의해 자동 매입(영업일에 한함)하고 고객 및 이체출금기관의 출금 요청 등 출금사유가 발생할 시 CMA계좌의 예탁금으로 응하고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CMA투자상품을 해당금액만큼 자동 환매하는 서비스
2. 금융결제원의 지로서비스와 CMS업무 등 자동이체 서비스
3. 자동화기기, 전자금융 등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입출금 및 이체서비스
4. 그 밖의 CMA계좌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제4조(CMA서비스 약정의 성립)

- ① CMA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이름의 CMA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② CMA서비스 약정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CMA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Wrap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CMA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RP의 경우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Wrap의 경우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설정약관을 따른다.

제5조(CMA투자상품의 지정 및 변경)

고객은 자동매입 및 환매되는 CMA투자상품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CMA투자상품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야 지정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CMA계좌 입금 및 출금)

- ① CMA계좌의 입출금은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중심계좌약관 등 입출금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회사는 고객에게 중심계좌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입출금 이용가능 시간은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고객이 거래매체(증권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 등)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 시 해당 금융기관 및 자동화기기 출금한도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③ CMA계좌의 입금처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1. 고객이 CMA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경우
 - 가. 고객의 CMA계좌에 별지에서 정한 RP매입시간 이전에 현금이 입금된 경우, 회사는 입금일 현재 회사 홈페이지(<https://www.miraeassetdaewoo.com>>이용안내/문의>공지사항)에 고시한 수익률로 별지에서 정한 시간에 RP를 자동으로 매입하여 고객계좌에 예약한다. 자동매수시간 이후 또는 비영업일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서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예약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입금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에 별지에서 정한 자동매수시간에 RP를 자동 매수한다. 다만, 입금된 현금이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나. RP는 별지에서 정한 재투자기간에 따라 만기일에 자동 환매한 후, 환매한 날 별지에서 정한 자동매수시간에 환매대금 전액으로 RP에 자동투자 된다.
 - 다. 고객이 연금저축계좌 내 예약증권을 담보로 '예약증권담보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CMA 계좌 내 용자이자, 연체이자 등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수금이 있는 경우 입금 시 미수연체이자, 미수이자 순으로 자동상환한다.
 - 라. 자동 매입되는 RP의 종류는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객이 CMA투자상품으로 Wrap을 선택한 경우

고객의 CMA계좌에 별지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 매입시간 이전에 현금이 입금된 경우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시간에 투자대상자산을 매입하여 고객계좌에 예약한다. 자동매수시간 이후 또는 비영업일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서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예약금이용료를 지급하며, 입금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에 별지에서 정한 자동매수시간에 투자대상자산을 자동 매수한다. 다만, 입금된 현금이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수량이 부족하거나(RP에 한함), 관계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도, 제재, 금지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이 지정한 CMA투자상품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입금한 금액은 CMA계좌의 예약금으로 처리하며 **별지에서 정한** 예약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회사는 이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후 제3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⑤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CMA계좌의 출금처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1. 고객이 CMA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경우
 - 가. 고객 및 이체출금기관이 CMA계좌에서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품 매수결제 요청 시 회사는 CMA계좌의 예약금으로 우선 출금요청에 응한다.
 - 나. 가목의 출금 요청액이 CMA계좌에 출금 가능한 예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먼저 매입한 RP를 자동환매하여 출금 처리한다.
 - 다. 고객은 출금 등을 위한 RP 환매와 관련하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HTS등에서 직접 환매를 요청 할 수 있다.
 2. 고객이 CMA투자상품으로 Wrap을 선택한 경우
 - 가. 고객 및 이체출금기관이 CMA계좌에서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CMA계좌의 예약금으로 우선 출금요청에 응한다.
 - 나. 가목의 출금 요청액이 CMA계좌에 출금 가능한 예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고객계좌의 투자일임자산을 처분하여 출금요청에 응한다.
 - 다. 일부 투자일임자산의 시장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또는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출금은 제한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자동이체 입출금)

- ① 회사가 자동이체 입출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 기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체출금기관 : CMA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하는 기관
 2. 이체입금기관 : CMA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기관
- ② 이체출금기관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이체출금 신청 고객의 정보를 제시하고 해당 고객의 CMA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 하는 경우, 회사는 이체출금기관이 제시하는 고객 정보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CMA계좌에 대한 출금 요청에 응한다.
- ③ 고객이 이체출금기관 및 이체입금기관에 자동이체입출금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은 증권계좌번호 또는 연계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체출금기관 및 이체입금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위험)

- ① CMA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경우,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환매수 또는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알맞은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고객은 인도된 증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현금화에 곤란을 겪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시작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그 밖의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채무 갚는 것을 미룸) 및 조정, 사적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를 미루거나 채무자와 채무이행조건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 및 자금관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경우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그 밖의 이에 알맞은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예금자보호법」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 받은 경우
 8. 그 밖의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시작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CMA투자상품으로 Wrap을 선택한 경우, Wrap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고,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 ④ CMA 계좌를 이용한 CMA투자상품 이외의 금융상품투자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투자하여야 하며, 고객의 투자판단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9조(이용수수료)

- ① 회사는 CMA서비스와 관련하여 별지에서 정한 이용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② 고객이 CMA서비스 이용 시 제휴 금융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이용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해당 거래가 발생한 때에 해당 이용수수료를 CMA계좌에서 출금하여 보관하였다가 제휴 금융기관과의 약정한 시기에 제휴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제10조(체크/신용 카드 신청 및 이용)

- ① CMA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 및 기존 보유고객은 체크/신용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해당 신용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CMA 계좌에 연결된 연계계좌 또는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된 CMA계좌를 통해 체크/신용 카드 이용금액을 결제한다.
- ② 고객이 체크/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출금 요청이 고객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제7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처리 된다.
- ③ 체크/신용 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체크/신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의 체크/신용 카드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11조(약정의 해지 및 변경)

- ① 고객은 전화,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단, HTS가입고객에 한함)에 따라 CMA서비스 약정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휴 은행과의 업무제휴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CMA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기재내용 변경상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통지한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면책)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2. 출금신청서, 기타 제 신청서류의 인감(서명)을 고객이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출금에 응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리행사의 청구에 응하였음에도 고객이 인감(서명)을 분실·위조·변조·도용당하여 발생하는 손해. 단, 회사가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제공)

회사는 CMA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의 동의 하에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16조(약관 및 주요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거래제한)

- ① CMA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8조(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9조(분쟁조정)

이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전자금융 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RP형 CMA서비스 이용약관'에 '중심(단독)계좌약관' 내 CMA 관련 항목을 통합하여 'CMA서비스 이용약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회사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으로 인해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자산관리 CMA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통합하여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6조제1항의 입출금 가능시간은 다음과 같다.

- RP, Wrap CMA상품

- ① 영업점에서의 입출금 : 영업일 업무 마감시간 전까지
- ② 이체출금(은행) : 영업일 16:30까지
- ③ 사이버, CD기 (이체)출금 : 24시간(공휴일 포함) 가능

※ 사이버, CD기 입출금업무 제한시간

- 매일 23:30~00:30 : 은행 마감업무로 인해 CD기 (이체)출금업무 불가
- 매영업일 05:30~07:00 : 당사 마감업무로 인해 CD기 (이체)출금업무 불가

2. 제6조제3항의 CMA 투자대상자산 매입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RP

- 고객이 개인일 경우 : 매영업일 17:20 ~ 22:00
- 고객이 법인일 경우 : 매영업일 17:20

② Wrap

- 고객이 개인일 경우 : 매영업일 17:00 ~ 17:20
- 고객이 법인일 경우 : 매영업일 16:20 ~ 16:30

3. 제6조제3항의 투자대상자산 매수금액 최소단위는 다음과 같다.

: CMA 내 투자대상자산의 매입신청은 입금된 금액이 1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한다.

(단, 법인용 Wrap형 CMA는 금액을 1원 이상으로 한다.)

4. 제9조의 이용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영업점, 사이버, 은행CD기를 통한 이체 및 출금 수수료는 무료

5.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예탁금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예탁금이용료는 회사 홈페이지(<https://www.miraeassetdaewoo.com>>이용안내/문의>트레이딩가이드>매매수수료/예탁금 이용료)에 게시

6. 제6조제3항의 자동매입되는 CMA RP의 종류 및 재투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CMA RP 종류	재투자기간
RP형 CMA(개인)	31일
RP형 CMA(법인)	31일
개인사업자용 CMA	31일